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03조 관련)

가.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졸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용자격
3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가목으로 응시하는 민간 근무 경력자의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